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3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 손명수 · 김현정 · 부승찬

서영교 · 허성무 · 김태년

김원이 • 홍기원 • 이연희

이후기 • 안태준 • 윤종군

정태호 · 민홍철 · 남인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(이하 "민자철도 사업"이라 함)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가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신분당선 등 수도권 간선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 등 다수의 대형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(공사・현장 관리)과 한국부동산원(토지보상) 등 사업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민자철도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일부 민자철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기간 장기화, 인허가 및 지작물 이전 지연 등의 사유로 개통시점이 연장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,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인력의 한계로 민 자철도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·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민자철도 사업을 적기개통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9제1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9의 제목 중 "위탁"을 "위임·위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44조의9(권한의	<u>위탁</u>)	<신	제44조의9(권한의 <u>위임·위탁</u>) <u>①</u>
설>			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
			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			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
			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(생 략)			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		음)